#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



# 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 【전문】

【피고인】 피고인(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1)

【검 사】 신봉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외 2인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선박명 3 생략) 저가 매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임의사용으로 인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및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대금임의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임원 급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이유]

]

[이유]

1

[이유]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